

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 정비)

1. 법률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6/6/30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· 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, 개정된 「상법」(2026.3.6. 개정)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정비(제106조 제5항 제1호)
 - 개정 「상법」에 따라 신탁업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, 신탁계약이 종료 · 해지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지체 없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
 - 이에 따라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으로 반영하고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을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 삭제
 - 신탁계약 연장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계약기간 중 처분하는 등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우회하는 행위가 불가능
-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(제176조의2 제2항 제6호 라목)
 - 개정 「상법」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맞추어,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마련된 종전의 규정을 정비
-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금지(제176조의2 제2항 제6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삭제)
 - 개정 「상법」에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전면 금지
 -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-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사이의 정합성을 제고하고, 당초 긴급한 자금조달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교환사채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

□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공시 대상 확대(제176조의2 제6항)

- 개정 「상법」에서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면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등을 기재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 승인 받아야 함
- 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대비 1%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에 부과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, 향후 처리계획 및 실제 처리현황 공시(자기주식보고서)를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

□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기간 변경(제176조의7 제4항)

- 개정 이전 시행령은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한 자기주식은 매수한 날로부터 5년 내 처분하도록 규정
- 개정 「상법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상 보유기간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으로 하되 이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
 - 또한, 해당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